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10.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0. 11. 16

다. 상 정 일 자 : 2000. 11. 16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나. 개정사유

-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표준 모델안을 적용하여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행정간소화 및 민원 편의차원에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 확대적용(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설 산업 기본법에 부합) ⇒ (제8조)
-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지정일 이내에 미납사유 제출시는 5일 이내의 기간 연장 ⇒ (제11조)
- 수용가 계량기 설치 위치를 수용가와 협의하여 설치 ⇒ (제17조)
-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제23조)
 - 지진 및 홍수등의 자연재해가 발생되어 정상공급이 불가할 때
 - 전시 상수도 시설의 피해로 정상공급이 불가할 때
 - 관파열 및 배수지 청소등으로 정상공급이 불가할 때

- 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가 불가피 할 때
 - 오염수 발생 및 기타 상수도 관리상 급수정지 및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표준 모델을 적용,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조례의 각 조항을 보다 민주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키 위한 것으로,
-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 기준을 국가 기술자격법등에 부합되도록 확대 하므로써 급수공사 대행업의 폭을 넓혀주었으며 공사비의 선납금도 지정일자에 납부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지는 5일이내에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특히,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효과 및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 기능사 2급, 건축배관 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제1호 라목에 정한자 (단, 상수도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하며,납부지정일 이내에 미납사유를 제출시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중 “신청인의”를 “원인제공자의” 로 한다.

제17조 제2항중 “군수가”를 “군수와 수용가가 협의하여”로 한다.

제18조 제2항중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필요한 처분”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중 “기간”을 “제한”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진 및 홍수등의 자연재해가 발생되어 정상공급이 불가할 때
 2. 전시 상수도시설의 피해로 정상공급이 불가할 때
 3. 관파열 및 배수지 침소등으로 정상공급이 불가할 때
 4. 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때
 5. 오염수 발생 및 기타 상수도 관리상 급수정지 및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때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중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을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생략) 1. <u>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u></p> <p>2 - 3. (생략) ②~③ (생략)</p>	<p>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현행과 같음) 1. <u>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 기능사 2급, 건축배관 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 제1호의 라목에 정한자(단, 상수도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자)</u></p> <p>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생략) ②<u>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u></p> <p>③-④ (생략)</p>	<p>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현행과 같음) ②<u>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지정일 이내에 미납사유를 제출시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p> <p>②-⑤ (생략)</p>	<p>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원인 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p> <p>②-⑤ (현행과 같음)</p>
<p>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생략) ②<u>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u>군수가</u> 정한다.</u></p>	<p>제17조(수도의 사용) ①(현행과 같음) ②<u>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u>군수와 수용가가 협의하여</u> 정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18조(신고) ①(생략)</p> <p>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조사케하여 <u>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u></p>	<p>제18조(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조사케하여 <u>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u></p>
<p>제23조(급수장치 및 사용기간) ①군수는 <u>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u></p> <p>②-③ (생략)</p>	<p>제23조(급수장치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진 및 홍수등의 자연재해가 발생되어 정상공급이 불가할 때</u> 2. <u>전시 상수도시설의 피해로 정상공급이 불가할 때</u> 3. <u>관파열 및 배수지 청소등으로 정상공급이 불가할 때</u> 4. <u>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때</u> 5. <u>오염수 발생 및 기타 상수도 관리상 급수정지 및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때</u>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2조의2(가압료 징수) ①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가압료 1㎡당원으로 한다.</p>	<p>제32조의2(가압료 징수) ①(삭제)</p>

현행	개정안
<p>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